「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2020. 11.

인천교통공사
[안 전 관 리 실]

Ⅰ. 개 요

□ 적 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기 간 : **2020. 11. 24.(화) 0시 ~ 12. 07.(월) 24시까지**

□ 지 역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추진배경)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격상**

□ **(목 표)**

○ **2단계 상향**을 통해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

□ **단계별 개념 및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Ⅱ. 세부방안

□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방역조치**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구분	대상 시설	기존 분류
중점 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
	▲식당·카페	중위험
일반 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중위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확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저위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강화 방안

구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 관리시설 (9종)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인천시 조정>** ▲ 유흥시설 5종 (시설면적당 8㎡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간 이동금지) ⇒ 8개 구만 적용 ※ 다만, 강화군, 옹진군은 유흥시설(5종)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유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집합금지 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 노래연습장 3) 실내 스탠딩공연장	•필수시설 外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 관리시설 (14종)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1) 마스크 착용 2) 출입자 명단관리 3)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4㎡당 1명), 좌석 띄우기 등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 붙임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핵심방역수칙' 참고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관한 방역조치

구 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인천시>**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금지** (2020.11.24.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변경**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11.23.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현행유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예매 제한 권고	KTX, 고속버스 등 50% 예매 제한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숙박 행사 금지)	•모임·식사 금지 **<인천시 조정>**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50% 이내(좌석 수 띄우기)로 제한** -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 강화군, 옹진군이 1단계 현행유지에도 공통 적용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학교 유치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조정 가능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전 인원의 1/3)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붙임 '모임·행사 및 종교활동 핵심방역수칙' 참고

□ 국공립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구 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국공립 시설	•경륜·경마장 등 50% 인원 제한 •내부시설 운영중단※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운영(50%)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운영 (30%)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중단 •이외 시설 운영(30%)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 복지시설	운영 가능	운영 가능	운영 가능	운영 가능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월미바다열차 30% 인원제한**, 어린이과학관 30% 인원제한 운영

□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1차)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 **(2차)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시 /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시 ※ 질병관리청에서 1개월 계도기간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인천시 전역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시 ~ 10. 11.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조치 해제】 2020. 9. 14. 0시**

- (과태료) 2020. 9. 3. 0시 ~ 9. 13. 24시

○ **인천시 소모임 자제 권고**

- (적용기간) 2020. 11. 23. 0시 ~ 별도 해제 시

붙임 1.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2.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3. 집합·모임·행사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4.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5.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6.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

<중수본 생활방역팀, '20.11.23(월)>

구분	대 상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뷔페의 경우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카페·식당	**공통 적용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붙임2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단, 멀티방은 8㎡ 미만인 경우, 1실당 1명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②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PC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추가조치 포함) 참조**

붙임3 집합.모임.행사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붙임4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붙임5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콜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유통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붙임6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